

정기(기동점검) 점검 조치결과보고

〔남산예정자락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

- 점검일시 : 2018.07.06 (금)
- 조치결과
- ◆ 점검자 : 전용현

지적내용	점검사진	조치일자	조치사진
		조치내용	
<p>○ 흙막이가시설 안전</p> <p>- A1 교대작업장의 흙막이가시설은강지보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백호를 통하여 과굴착을 하고 있어 붕괴재해 우려가 있으니, 신속하게 지보재를 설치 후 작업하기 바람.</p> <p>※ 건설안전기본지침 P-30 (흙막이공사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p> <p>※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p>	  	<p style="text-align: center;">2018.07.13</p> <p>1. 2018년 7월 3일 암판정 완료</p> <p>2. 미확정도면이고 공사중지요청중으로 굴착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지면까지 미굴착으로 자립안정이 확보되거나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불안정요소 발견시 압성토 등을 실시 예정</p>	

○ 흙막이가시시설 안전

- A2교대의 흙막이가시시설은 붕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보완하기 바람.

① 하부 노출된 사면은 붕괴방지를 위하여 토류판 즉시 설치 요망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기 업무지시 하였으나 미이행 중)

② 흙메우기 하부구간이 미용접되어 있으니 보완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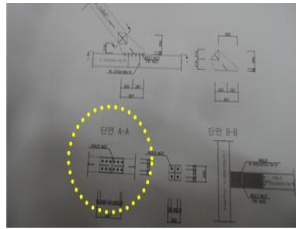
③ 볼트가 미체결된 화태쌓기부 즉시 체결 요망

④ 흙막이 가시시설 배면부는 강우 시 즉시 우수가 배출되어 토압이 증가되지 않도록 배수로 설치 등을 검토하기 바람.

※ 건설안전기본지침 P-30

(흙막이공사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2018.07.13

1. A2교대의 흙막이가시시설은 붕괴 재해 예방을 위하여

① 연암이고 절리가 적고 파괴가 적으며 현재 버림판 타설 완료에 따라 토류판 설치가 어려워 이에 따라 쇄기 받침으로 하부를 막아 토사의 유출을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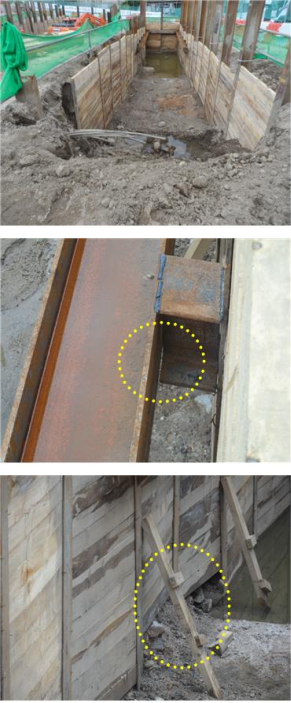
② 주기적 관찰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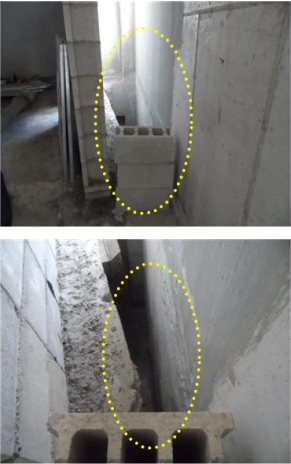
③ 흙메우기 하부구간 용접




④ 화태쌓기부 볼트 체결

⑤ 흙막이 가시시설 배면부는 강우 시 즉시 우수가 배출되어 토압이 증가되지 않도록 좌측부에 배수로 설치



<p>○ 흠막이가시설 안전</p> <p>- 하수Box 공사를 위하여 설치중인 흠막이가시설은 붕괴 예방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보완하기 바람.</p> <p>① 띠장 등의 강재가 미설치되어 있어 붕괴 재해 우려가 있으니 보완요망</p> <p>② 띠장 흠메우기 하부 구간이 미용접되어 있으니 보완요망.</p> <p>③ 토류판을 기대여 가설계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근로자 추락재해 우려가 있으니 보완요망.</p> <p>※ 건설안전기본지침 P-30 (흠막이공사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p> <p>※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p> <p>※ 건설안전기본지침 P-18 (가설통로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p>		<p>2018.07.13</p> <p>1. 하수Box 공사를 위하여 설치중인 흠막이가시설은 붕괴 예방을 위하여</p> <p>① 2018년 7월 9일 일부구가 풍화암 확인하였고 추후 암판정 위원회에서 판정 예정</p> <p>② 미확정도면이고 공사중지요청중으로 굴착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저면안까지 미굴착으로 자립안정이 확보되거나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불안정요소 발견시 압성토등을 실시 예정</p> <p>③ 띠장 흠메우기 하부구간 용접</p> <p>④ 토류판 가설계단 폐기 및 사다리로 교체</p>	
<p>○ 추락재해 예방</p> <p>- 교통방송국측 철근 및 거푸집 조립작업장 상부는 근로자 추락재해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바람.</p> <p>※ 건설안전기본지침 P-12 (추락 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p> <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p>		<p>2018.07.13</p> <p>1. 교통방송국측 철근 및 거푸집 조립작업장 상부 안전난간을 설치</p>	

<p>○ 추락재해 예방</p> <p>- 방재난본부 리모델링 공사장은 수평개구부가 안전시설 없이 노출되어 있어 근로자 추락재해 우려가 있으니, - 안전난간 및 추락위험 표지를 설치하기 바람.</p> <p>※ 건설안전기본지침 P-12 (추락 재해예방 안전 시설 및 작업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p>		<p>2018.07.07</p> <p>1. 근로자 추락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대 및 추락주의 안전간판 설치</p>	
<p>○ 낙하·비래 재해 예방</p> <p>- 교통방송국측 지하의 기초 철근 및 거푸집 조립 작업장은 기존 구조물의 잔재낙하로 인하여 재해 발생우려가 있으니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기 바람</p> <p>※ 건설안전기본지침 P-21 (낙하 재해예방 안전 시설 및 작업기준)</p>		<p>2018.07.13</p> <p>1. 현재 공사중지 요청 중으로 작업이 중단된 상태로 작업 재개 전 비계를 설치하여 부석을 제거하고 방호선반 설치 예정</p> <p>2. 출입구 폐쇄</p>	
<p>○ 감전재해 예방</p> <p>- 교통방송국측 작업장의 세륜기는 접지가 미설치되어 있어 감전 재해 우려가 있으니 보완하기 바람.</p> <p>※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 18 (기계기구 접지)</p>		<p>2018.07.13</p> <p>1. 교통방송국측 작업장의 세륜기 접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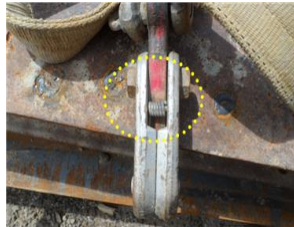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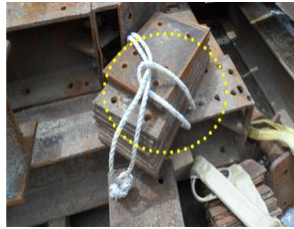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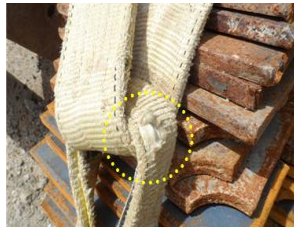
<p>○ 가설통로 안전</p> <p>- A2교대 흙막이 가시설 배면부 사면에 설치한 분전반은 급경사로 근로자가 조작을 위하여 이동 시 전도 등의 재해 우려가 있으니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가설계단형태의 통로를 확보하기 바람.</p> <p>※ 건설안전기본지침 P-45 (작업자 통로확보 및 안전작업기준)</p>		<p>2018.07.12</p> <p>1. A2교대 흙막이 가시설 배면부 사면에 설치한 분전반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조작하기 위해 분전반의 위치를 이동</p>	
<p>○ 가설통로 안전</p> <p>- 교통방송국측 지하의 기초 철근 및 거푸집 조립장 콘크리트 타설 시 근로자 작업장소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비계는 추락 및 붕괴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보완하기 바람</p> <p>① 비계 기둥이 철근으로 되어 있어 좌굴에 의한 붕괴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완 요망</p> <p>② 작업발판상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근로자 추락방지 대책 강구 요망.</p> <p>③ 가설계단은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대 설치 요망.</p> <p>※ 건설안전기본지침 P-13 (강관비계 설치기준 및 안전작업기준)</p>	 	<p>2018.07.09</p> <p>1. 교통방송국측 지하의 기초 철근 및 거푸집 조립장 콘크리트 타설 시 근로자 작업장소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비계는 추락 및 붕괴재해 예방을 위하여</p> <p>① 비계 기둥을 좌굴에 안정한 강관비계를 설치하고 강관내부는 공사 재개 시 무수축물탈을 충진 예정</p> <p>② 작업발판상부에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 근로자 추락재해 예방</p> <p>③ 가설계단 안전난간대 설치</p>	 

<p>○ 기타 안전관리</p> <p>- A2교대 흠막이 가시설 앞 도로는 살수차 및 PE방호벽으로 인하여 차도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으니,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p>		<p>2018.07.07</p> <p>1. A2교대 흠막이 가시설 앞 도로 보행자 통로 확보</p>	
<p>○ 품질관리</p> <p>- 소방재난본부 리모델링 작업장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보완하기 바람.</p> <p>① 거푸집 잔재 제거 및 곰보발생부 보수 ② 철근노출부 보수</p>		<p>2018.07.09</p> <p>1. 소방재난본부 리모델링 작업장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보완</p> <p>① 거푸집 잔재 제거 및 곰보발생부 보수 ② 철근노출부 보수</p>	

○ 중량물취급 안전

- 교통방송국 작업장은 인양중 낙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보완하기 바람.

- ① 페드럼통을 천공하여 운용중인 자재운반구 사용 중지 요망.
- ② 마모가 심한 슬링벨트 폐기 조치 요망.
- ③ PP로프를 이용한 강재운반을 지장하고 전용 자재운반구를 사용하기 바람.
- ④ 하카는 용수철 부위가 파손되어 자재조임력이 상실되어 있으니 보수 후 사용하기 바람.



2018.07.10

1. 교통방송국 작업장은 인양중 낙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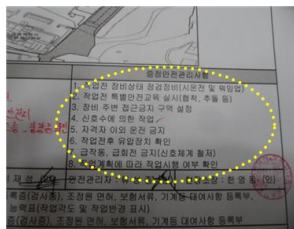
- ① 페드럼통을 천공하여 운용중인 자재운반구 사용 중지 및 반출
- ② 마모가 심한 슬링벨트 폐기 및 양품으로 교체
- ③ PP로프를 이용한 강재운반을 금지
- ④ 기존 부적합한 하카는 반출하고 신제품 사용



○ 건설기계 안전

- 예장숲측에서 상차작업 중인 백호는 갓길붕괴로 인하여 전락사고가 발생할 시 삼일대로에 주행 중인 차량에 2차 재해를 유발할 수 있으니, - 장비작업계획서에 상기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하기 바람.

※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 29 (건설기계)



2018.07.11

1. 예장숲 측에서 상차 작업 중인 백호는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굴착 폭을 확대하고 장비의 전도 위험을 방지하여 삼일대로에 주행 중인 차량에 2차 재해를 예방하고 장비작업 계획서에 반영

